

#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 벌금 · 징역 부과기준

산업안전보건법의 과태료와 벌금 및 징역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직무규정의 위반사항”에 있어 조치기준 및 이와 관련된 제반 관계서류의 작성에 대해 법조항 별로 분류하고, 이에 대한 참고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42조제1항)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 작업환경측정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② 측정대상 유해인자를 일부 누락시킨 경우

**나. 조치기준 :** 미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 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미실시한 경우에는 미실시 횟수별로 과태료 부과와 함께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 병행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라. 관계서류 :**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별지 제23호서식]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 년도  상  하 반기)

1. 사업장 개요		① 과태료	
사업장명	주소	② 과태료	
고소 제 기	사업장번호	③ 과태료	
유해인자	측정일자	④ 과태료	
측정장소	측정장소	⑤ 과태료	
측정방법	측정방법	⑥ 과태료	

2. 측정방법명 :  
 3. 측정일자 : 년 월 일 ~ 년 월 일 일  
 4. 측정결과

측정항목	측정결과	기준치	비고	측정방법	측정장소	측정일자	측정방법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노출량

5. 측정 후 조치사항(○표 및 관련행위 기재)  
 6. 최근 1년간 사업장 또는 작업장내의 근무자중 또는 변경자부  
 7.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8.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9.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10. 측정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결과를 위하여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사업주 (인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직위

구비서류 : 1.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2. 노출량 측정결과에 대하여 개선완료 또는 개선중인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서류. 미개선시 경우에는 개선계획서

210mm×297mm(정판용지) 60%세화용종이

## 2. 작업환경측정결과를 근로자에게 미통보 또는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 불이행 (제42조 제3항)

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결과를 당해 작업장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통보토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작업환경측정결과 설명회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법 제42조제5항)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 기관으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2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칙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다.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4.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인당)
- 나. 조치기준 : 미 실시 1회의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다만, 최근 2회이상 연속
- 다. 부과금액 : 1인당 20만원이하의 과태료
- 라. 관계서류 : 건강진단결과표

### 5.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대표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제1항)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강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근로자건강진단시 근로자 대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회시키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6. 특정근로자 임시건강진단 실시 명령 불이행 (제43조 제2항)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주에 대하여 특정 근로자에 대한 임시건강진단의 실시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 가. 조치기준 : 즉시 범죄인지보고 후 수사에 착수 및 행정조치 병행
- 나. 부과금액 :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

### 7.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근로자 (법 제43조제3항)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지정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건강진단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등"이라 한다)의 건강진단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강진단기관 등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할 수 있다.

- 가. 위반행위 :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적절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10만원이하의 과태료
- 라. 관계서류 : 건강진단 실시 통보 관계철

### 8.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 (법 제43조제4항)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근로자에게 통보하고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 건강진단실시결과를 허위로 보고한 경우  
② 건강진단실시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보고 요구절차에 의하여 보고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하되, 허위보고의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위반사항 ②항은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 라. 관계서류 : 건강진단결과표

### 9. 건강진단결과 근로자 건강유지를 위한 조치 불이행 (제43조 제5항)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및 작업환경측정의 실시, 시설·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구분	항목	비행 소견	비행 소견
역	A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C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D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E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F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G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H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I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J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반	K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L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M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N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O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P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Q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R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S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T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조	U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V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W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X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Y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Z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A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B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C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D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소	AE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F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G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H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I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J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K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L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M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N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의	AO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P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Q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R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S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T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U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V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W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X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의	AY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AZ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A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B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C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D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E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F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G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BH	건강진단실시결과	200

- 가. 조치기준 : 30일 이내에 시정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범죄인지 보고 후 수사에 착수
- 나. 부과금액 : 1000만원이하의 벌금
- 다. 관계서류 : 조치결과 관계철

## 10.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한 경우 (법 제43조제6항)

사업주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직접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건강진단기관 등으로 하여금 건강진단결과에 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동의 없이는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결과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위반행위 : 근로자건강진단 설명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적정한 기간내에 실시토록 행정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

## 11.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법 제43조제7항)

사업주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가. 위반행위 : 사업주가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근로자의 건강보호·유지 이외의 고용상 또는 인사상 불이익 등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 12.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 및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43조의2제4항)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주 및 근로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가. 위반행위 : ① 역학조사 실시시 사업주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② 역학조사 실시시 근로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나. 조치기준 : 협조토록 행정조치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조치 병행
- 다. 부과금액 : 위반사항 ①항은 3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항은 5만원이하의 과태료 